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08호

2020.9.14.(월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0-384호	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	 2
제2020-385호	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무도장 집합금지명령	 3
제2020-386호	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행정명령	 4
제2020-387호	음식점,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 고시	 6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84호

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14일
서울특별시장

□ 집회금지 개요

가. 금지대상 :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

※ 집회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

나. 금지기간(연장) : 2020년 8월 21일 0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

－ 당초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59호) 금지기간 : 2020년 8월 21일 00시부터 9월 13일 24시까지

다. 위반시 처벌 :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)

라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를 생략합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85호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무도장 집합금지명령

서울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무도장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14일

서울특별시

1. 집합금지명령 개요

○ 대 상 : 무도장

※ 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시설

○ 기 간 : '20.9.14(월).0시 ~ 9.27(일).24시

○ 내 용 : 무도장에 대한 집합행위금지

- 무도장내에 2인 이상이 모여 스포츠댄스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

○ 근 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
○ 사 유 : 무도장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콜라텍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로 주 이용자가 5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, 밀접접촉과 군집인원이 많은 장소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취약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함

○ 효력발생일 : 2020년 9월 14일

2. 위반 시 조치사항

○ 위반한 사업자 및 참여자 고발,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
(300만원 이하의 벌금)

-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및 방역비용 구상 청구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86호
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행정명령
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(2020.9.14.)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긴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.

2020년 9월 14일

서울특별시장

1. 대상 : ‘150㎡ 이상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,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아이스크림·빙수전문점, 교습소·학원(독서실 포함)·스터디카페·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’의 사업주·종사자 및 이용자
2. 내용
 - 가. 사업주·종사자 :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
※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 - 나. 이용자 : 전자출입명부 인증
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3. 사유
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동선 확보를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우선 설치·이용을 의무화 함
4. 효력발생기간 : 2020년 9월14일00시부터 ~ 9월27일24시까지

붙임

시설별 전자출입명부 방역수칙

☐ 150m' 이상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

사업주·종사자 수칙

- ▶ 출입자 명부 관리
 -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
 - ※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
이용자 수칙

-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
 -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
☐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아이스크림·빙수전문점

사업주·종사자 수칙

- ▶ 출입자 명부 관리
 -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
 - ※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
이용자 수칙

-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
 -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
☐ 교습소·학원(독서실 포함)·스터디카페·직업훈련기관

사업주·종사자 수칙

- ▶ 출입자 명부 관리
 -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
 - ※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
이용자 수칙

-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
 -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☐ 실내체육시설

사업주·종사자 수칙

- ▶ 출입자 명부 관리
 -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
 - ※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
이용자 수칙

-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
 -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87호

음식점,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 고시

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조정 시행(2020. 9. 14.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,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14일

서울특별시

1. 대 상 : 서울특별시 전 지역 ‘150㎡ 이상’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,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아이스크림·빙수전문점의 사업주·종사자 및 이용자

* 프랜차이즈형태 업소(커피/음료, 제과·제빵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)

- 공정거래위원회의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한 가맹사업거래자
- 직영점 형태 포함
- (검색방법)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→ 가맹희망플러스 → 브랜드별 비교정보 중 업종: 외식, 분류: 커피, 음료(커피 외), 제과제빵 및 아이스크림/빙수에 검색되는 가맹사업거래자 브랜드

2. 내 용

가. 대상 시설의 사업주·종사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

○ 150㎡ 이상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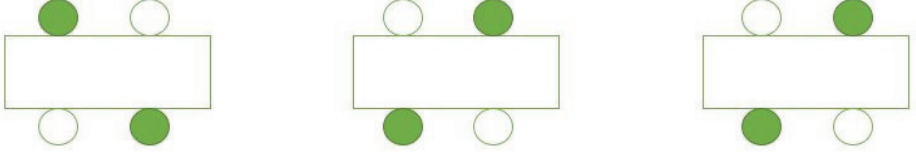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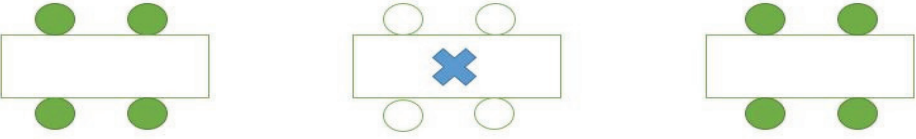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·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* *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 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·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· 시설 내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주문·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·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·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· 전자출입명부 인증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·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·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주문·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
※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아이스크림·빙수전문점 제외(별도 핵심 방역수칙 적용)

○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아이스크림·빙수전문점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*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* *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▶ 시설 내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주문·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▶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▶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*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▶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▶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주문·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< 프랜차이즈형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>

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

나.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「원스트라이크-아웃제」 적용

- 핵심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자치구에서 집합금지조치(기본 2주)

3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 -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 -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
4. 적용기간 : 2020년 9월 14일 0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

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 연장 가능

5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0년 9월 14일 00시부터

6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조치(기본 2주) 되며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동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, 조사, 치료 등 방역비용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.

9. 처분 담당자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. 끝.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 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